

‘기러기 아빠’들의 직업 교수 > 사업가 > 회사원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보낸 이른바 ‘기러기 아빠’의 직업은 교수나 사업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www.hifamily.net)는 4~5월 기러기 아빠 98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30~40대 주부 324명을 대상으로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러기 아빠’의 직업은 교수가 27명(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7일 밝혔다.

교수에 이어 사업가가 26명(27%)으로 뒤를 이었고 회사원(18명)·의사(14명)·변호사(7명)·공무원(5명)·종교인(1명) 등 순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700만원이 3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원 25명(26%) ▲900만원 이상 15명(15%) ▲300만원 미만 14명(14%) ▲700만~900만원 13명(13%) 등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송금액은 300만~500만원이 33명(34%)로 가장 많았고 500만~700만원을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도 29명(30%)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액과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이 비슷한 사람은 35명(36%)이었지만 15명(15%)은 소득보다 오히려 송금액이 더 많았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의 절반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기러기 아빠 중 45%는 ‘무한 경쟁적 교육시스템’을 위해서, 32%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택한 것으로 응답했다.

30~40대 주부 324명 중 87%는 기러기 아빠에 대해 ‘바라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 중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다’는 응답은 21%에 달했고 응답자 53%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기자 hwangtae@kwangju.co.kr

“지구대 근무 열악” 현직 경찰이 憲訴

현직 경찰관 3명이 지구대의 근무 형태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7일 부산 사상경찰서 최모(51) 경사 등 경찰관 3명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한 경찰청 근무지침에 따른 지구대 근무 형태는 보통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리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상시근무제)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법률적 제한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구대 근무는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7시) 3일→야간근무(오후 7시~익일 오전 9시)→34시간 비번→야간근무→24시간 비번’의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 10만원 촌지도 최고 ‘정직’

■ 광주시교육청 금품·향응 징계기준 마련
향응은 3만원 이상 처벌 대상
시민단체 “실효성 없다” 반발

교사가 앞으로 학부모로부터 1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또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 받고 위반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교육청도 곧 자체 기준을 마련할 방침

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징계처분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하달한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근거로 마련됐다.

징계처분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 견책에서 최고 파면 처분을 받는다. 특히 교사가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했을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

■ 교원 금품·향응 관련 징계 기준

유형	수용	징계 기준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 이상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	수용	견책·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정직	해임·파면
직무관련금품·향응수수/위법부당 처분없을 때	수용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금품·향응수수/위법부당처분했을 때	수용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파면	파면	파면

지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징계처분 기준액도 기존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등 5단계에서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등 6단계로 최소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제공한 1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교사는 견책·감봉을, 학부모에게 적

극적으로 요구해 1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는 감봉·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향응을 받은 뒤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이번 징계에서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이면 감봉·정직·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이”라며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또는 단체로 식사대접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품수수는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무조건 처벌대상이며, 향응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3만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처벌 가능한 기준액은 3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사와 학부모의 직무상 관련 관계는 3년간 유효한 만큼, 가령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지도했던 교사가 이후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지 않더라도 3년 안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이를 받은 교사는 징계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교육과 시민사회’는 이날 교육부의 징계지침 하달과 관련 성명을 내고 “수동적이었는지 능동적이었는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실 효성이 없다”며 “의례적으로, 수동적으로, 위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금품 수수 교사들은 견책,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기자 hwangtae@kwangju.co.kr



‘우리쌀 지키기’ 여성들이 나섰다

광주·전남 1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 운동본부’ 우리쌀 지키기 여성연대(준비위원장 조희숙)가 7일 오후 2시 광주역 광장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여성연대는 향후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우리쌀지키기 100만인 서약운동’ 등 대시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기획재정기자 mjna@kwangju.co.kr

농부, 트럭 주차하다 80대 노모 치어 숨지게

진도...들일 마치고 집마당서

진도의 한 농부가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경 진도군 의신면 송정마을 문모(56)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 전남9마45XX 1t 트럭을 주차시키려다 어머니 김모(85)씨를 치었다. 어머니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9시에 끝내 숨

다.

문씨는 이날 들일을 마치고 집 앞마당에 차를 주차하던 중이었다.

문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후진하던 트럭의 적재함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며 “내 불찰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고백했다.

1남4녀 중 외아들이 문씨는 지난 30년 이상 홀로 남은 어머니를 봉양해온 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불법 거소투표’ 부의장 부인 구속

목포경찰청은 7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거소투표(居所投票)용지를 입수해 기초의원으로서 출마한 자신의 남편에게 기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부정선거 운동)로 신안군의회 김모(54) 부의장 부인 박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에 기초의원 ‘나’ 지구 선거구인 신안군 압해면에서 천모(여·74)씨와 김모(여·72)씨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거소 투표자 용지를 가져가 자신의 남편에게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6849) 김장독



연예계 동침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3명 353부대 문의 (062)366-4220

“어탕 흠쳐보다 천장붕괴 목욕탕 책임”

○남성이 여탕 천장 위에서 욕실을 흠쳐보다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목욕하던 여성이 다친 데 대해 목욕업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현섭 부장판사)는 7일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등을 다친 김모(여)씨와 가족이 목욕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8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탕 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무단침입을 방지했고 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

○김씨는 2003년 1월 충남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욕실 천장이 신원이 불명확한 한 남성의 하중을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건축자재가 몸을 덮쳐 목과 허리 등을 다쳤고 부상 충격으로 과민상태가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최고의 위치 / 최적의 조건
★★★★★
광주 금남로의 랜드마크 무/등/빌/딩

1.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2. (990) 중·일 빌딩
3. (990) 중·일 빌딩
4.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5. (990) 중·일 빌딩
6. (990) 중·일 빌딩
7.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8. (990) 중·일 빌딩
9. (990) 중·일 빌딩
10.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11. (990) 중·일 빌딩
12. (990) 중·일 빌딩
13.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14. (990) 중·일 빌딩
15. (990) 중·일 빌딩
16.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17. (990) 중·일 빌딩
18. (990) 중·일 빌딩
19. 11층 높이, 1100평 규모, 1100세대
20. (990) 중·일 빌딩

문의: 412-6230/4